

[별표 1] <개정 2016.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사용 목적

(제7조의2제3항 관련)

구분	기금사용 목적
1. 연구개발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지원 나.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시험용 시설(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 지원 다. 대기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연구용·시험용 시설 활용 지원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마.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보호 지원 바.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사.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을 협력중소기업에 파견 시 협력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소요비용 지원
2. 인력개발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지원 나.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훈련시설 활용 지원 다. 협력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 지원 라. 협력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시설 투자 지원
3. 생산성 향상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제21조에 따른 시설·설비·시스템을 말한다) 투자 및 개수·보수 지원 나.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자문 지원 및 자문으로 도출된 과제의 실행 지원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4.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지원	마.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장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 지원 바. 협력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사. 협력중소기업의 안전설비(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투자 지원 가.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나.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기술 도입 지원 1)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이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나. 협력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 중단으로 인한 단기자금 압박 방지를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시스템 구축 지원
---	--